

1. 개정이유

광역교통 특별대책 시행 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전문기관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변경 시에도 당초 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 특별대책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 추진 시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, 광역교통 개선대책 평가센터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(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나. 광역교통 특별대책은 별도 위임 규정이 없어 검토·심의 등의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를 반영할 필요(안 제8조)
- 다.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한 조문 삭제(안 제2조, 제10조)
- 라. 재검토기한 시점 조정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광역교통 특별대책 수립 및 시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”을 “지침”으로,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) 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은 「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」(이하 “개선대책지침”이라 한다)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광역교통위원장”은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“개선대책”은 “법 제7조의8에 따른 특별대책”으로 본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제8조”를 “제8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단서 중 “제5조(조사 및 분석) 및 제6조(교통수요 예측)”를 “제5조 및 제6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 제7조의8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

영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고, 검토 결과 같은 지침 제23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한 시·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직접 수립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 중 “2021년 7월 1일”을 “2023년 7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대중교통시설”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버스터미널·정류소·차고지·버스전용차로 등의 시설 및 공작물을 말한다.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8조(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) 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은 「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」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개선대책”은 “법제7조의8에 따른 특별대책”으로 본다.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 지침-----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제8조(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) 특별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은 「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」(이하 “개선대책지침”이라 한다) 제22조부터 제25조에 따른 개선대책의 검토·심의·보완 절차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광역교통위원장”은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</p>

제9조(특별대책의 변경)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특별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특별대책의 내용을 인용(引用)하는 경우 제5조(조사 및 분석) 및 제6조(교통 수요 예측)에 따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.

<신 설>

“개선대책“은 “법 제7조의8에 따른 특별대책“으로 본다.

제9조(특별대책의 변경) ① -----

----- 제8조까
지의 규정-----

----- 제5
조 및 제6조-----

-----.

② 법 제7조의8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“라 한다)가 영 제9조의6제4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이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고, 검토 결

<신 설>

제10조(특별대책의 시행) ① 광역
교통위원장은 법 제7조의8제3
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확정하거
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
여야 한다.

② 특별대책 수립권자는 법 제7
조의8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대
책을 통보받으면 영 제9조의6제
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

과 같은 지침 제23조의 기준에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
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한 시·도
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
보완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광
역교통 특별대책을 직접 수립한
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9조의6
제4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
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8
제5항에 따라 특별대책을 이행
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
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
발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거친
후 개선대책지침 제22조에 따른
검토를 받아야 한다.

<삭 제>

의 장 및 해당 대규모 개발사업
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
다.

③ 특별대책을 통보받은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
체의 장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
시행자는 법 제7조의8제5항에
따라 특별대책을 충실히 이행하
여야 한다.

제11조(재검토 기한) 국토교통부
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
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
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7월
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
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
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
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
야 한다.

제11조(재검토 기한) -----

----- 2023년 7월
1일-----

-----.